

기준경비율 제도 하에서 의원의 세무계획

오동일*

Tax Planning For Physician Under Base Expense System

Dong Il Oh*

요약 지난 50년 이상 무기장사업자에 적용해 온 표준소득률제도가 금년 소득세 신고시부터 기준경비율제로 변화된다. 병의원간의 의료전달체계가 제자리를 잡지 못하고 전문의들이 경제적 이유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개원 시를 이루고 있는 현재 의료계 상황에서 기준경비율 제도의 도입은 과거와 같이 무원칙, 무계획적인 지출을 더 이상 수용하지 않는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을 잘 준비하는 세무계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시행되는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 내용, 효과, 보완점 등을 알아보고 이 제도 하에서 적격 증빙의 수취 등 합리적인 세무관리를 알아보았다. 비록 기준경비율제도가 수입 측면에서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는 한계가 있으나 비용지출 측면에서 진일보한 정책이며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시행 발전되는 경우 전문가 그룹의 자의적인 세무신고는 어느 정도 줄어들 것으로 판단된다. 나아가 비급여 진료행위가 많은 진료과들의 수입을 보다 투명하게 밝힐 수 있는 제도의 보완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므로 의원 경영과 관련된 작은 지출에 대해서도 본 연구에서 제시된 것과 같은 증빙을 갖추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A new base expense system is implemented to substitute the standard income ratio system which has been used for more than 50 years. A base expense system requires a rigorous documentary evidences of important expenses such as purchase cost, labour cost, or rent. In order to make a successful tax savings, it is necessary to know the critical factors affecting tax payment in a base expense system. In this article, operating mechanisms of the base expense system and tax strategy under this system are introduced. If base expense system is successfully implemented, it will contributes considerably to progress in inducing tax compliance of non book keeping professionals who earn relatively high income in Korea.

Key Words : base expense system, standard income ratio system, tax compliance, tax planning

1. 연구배경 및 목적

자영업자 소득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과세 적정화를 이루려는 기준경비율제도가 금년 5월에 2002년 귀속 소득에 대한 소득세 확정신고부터 적용된다. 이 제도는 과거 오랜 기간동안 시행되어 있던 무기장 사업자의 표준소득율에 따른 소득 인정제도로부터 무기장 사업자라 하더라도 인건비, 건물 임차료, 매입비용 등 주요 비용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비용지출에 대한 증빙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의 시행은 의원의 세무신고와 관행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의원의 실제 발생 소득 파악은 조세형평의 문제뿐만 아니라 매년 인상되는 건강보험수가 및 환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의 인상 등과도 연계되어 있어 보건의

료정책과도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간 의원 소득 추정과 관련하여 많은 논쟁이 있어 왔고 의사의 세금 납부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비난도 있어 왔던 점에 비추어 보면 기준경비율제도는 의원을 포함한 자영업자 세무신고의 중대한 진전임에 틀림없다.

본 연구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의 내용을 알아보고 이 제도에 따른 각 진료과별 영향, 절세 관점에서 기준경비율 시행에 따른 의원의 합리적인 대처방안 등을 알아본다. 또한 적정과세를 위해 기준경비율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점을 살펴본다.

2. 기준경비율 제도의 운영방식

2.1 표준소득률제도의 내용

모든 사업자는 직전 1년간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 사이에 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따라서 사업자는 거래내용을 장

*상명대학교 금융보험학부 교수

부에 기록하고 장부를 근거로 소득금액을 신고하는 기장의무가 있으나 기장능력이 없는 대부분의 영세한 사업자는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한 소득을 인정해 왔다. 국세청에서는 무기장 사업자의 경우 정확한 소득금액을 확인할 수가 없으므로 그에 대한 대안으로 매년 업종별 경기변동요인 등을 파악하여 표준소득률을 조정·적용해 왔다. 표준소득률제도 하에서 무기장사업자의 소득금액은 다음 식 (1)과 같이 수입금액에 표준소득률을 곱해서 계산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표준소득률} \quad (1)$$

반면 장부를 기장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하여 신고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된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필요경비} \quad (2)$$

과거의 표준소득률제도는 사업자의 전반적인 기장능력이 부족하고 자율신고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업자의 개별적인 경영성과나 영업실상에도 불구하고 업종별로 소득률을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여 과세함으로써 과세의 형평성을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그간 지적된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표준소득률에 의한 추계신고자는 필요경비에 대한 임증책임이 없으므로 소득세조사를 피하기 위하여 고의로 소득세를 추계 신고하는 관행이 굳어져 왔고 이로 인하여 기장신고제도 확립이 어렵다. 둘째,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은 그 사업자의 개별적인 사업실상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실제소득률이 표준소득률보다 높은 사업자와 낮은 사업자간에 세부담의 불공평이 야기되었다. 셋째, 기장 사업자도 표준소득률을 최고소득률로 받아들여 기장신고소득을 표준소득률에 의한 소득 수준이하로 조절하여 신고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2.2 기준경비율 제도의 취지와 내용

2.2.1 표준소득률 제도의 대안 검토

위에서 지적된 것과 같은 표준소득률제도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이 제도는 1955년 도입되어 지금까지 근 50년 가까이 소규모 사업자의 신고편의와 행정능률을 제고하는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학계, 시민단체, 조세전문가로부터 표준소득률제도가 신고납세제도를 골격으로 하는 소득세제와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기장제도 확립을 저해하고 세금 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는 등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정직한 기장에 의한 성실한 신고제도의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거나 비공개하는 등으로 표준소득률제도를

개혁하라는 요구가 있어 왔다.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더라도 단기간에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도록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므로 무기장 단계에서 기장 단계로 연결해 줄 과도기적 중간단계를 설정하는 것이 정책대안으로 고려될 수밖에 없었다. 그 결과 완전 무기장으로부터 완전기장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간단계로 표준소득률 폐지의 대안으로 「기준경비율 제도」 도입하였다. 표준소득률제도를 폐지하고 대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안이 검토되었다[1].

첫 번째 대안으로 표준소득률을 제정하되 기장제도 확립을 위해 표준소득률을 비공개하고 국세청 내부자료로만 이용하는 방안이다. 이 방안은 모든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여야 자기의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기장유도 효과는 충분하나 많은 수의 무기장 사업자를 일시에 기장 사업자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소득세 신고시 표준소득률 폐지와 동일한 혼란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또한 공개되지 않은 표준소득률로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를 일률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어렵다.

두 번째 대안으로는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전문자격사 등 특정업종에 대해 표준소득률 적용을 배제하거나 당해 업종의 표준소득률을 폐지한 후 점차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되었다. 이 방안은 단계적으로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게 됨으로 사업자의 설득이 용이하고 행정부담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표준소득률 적용이 배제된 사업자가 표준소득률에 의해 추계신고를 하는 경우 적절한 제재 방법이 없고 특정한 업종만 표준소득률을 폐지하는 경우 당해 업종의 사업자만 불이익을 받게되어 불공평이 발생할 우려가 있었다.

마지막 대안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안의 절충형이다. 표준소득률을 폐지하고 무기장사업자가 합리적으로 소득을 계산할 수 있으며 표준소득률 폐지로 인한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새로운 소득계산방법을 도입·시행하면서 무기장 사업자를 점진적으로 장부를 갖추도록 유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안이었는데 이것이 결국 기준경비율제도가 된 것이다.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를 비교하면 다음 Table 1과 같다.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은 소득세법 제80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거나 법인세법 제66조 제3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Table 2에 나타난 금액 이상인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를 말하며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이 다음 Table 2에 미달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Table 1. 표준소득률제도와 기준경비율제도의 비교[2]

구 분	표준소득률제도	기준경비율제도
개별사업자의 사업실적 반영여부	업종별로 동일한 소득률을 적용받게 되므로 사업자의 개별 사업실적이 반영되지 않아 세부담의 불공평 발생	부수경비로 자동인정되는 기준경비율외에 주요 경비는 실제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받게 되므로 개별 사업실적이 반영됨
지출경비 입증책임유무	무기장사업자는 지출경비에 대한 입증책임이 없음	무기장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하여는 지출사실을 증빙에 의해 입증해야 비용 인정
장부기장에 미치는 효과	간단하게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으므로 장부기장을 기피하는 경향 발생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하는 것과 큰 차이가 없음

개시한 사업자로서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사업자이다.

2.2.2 기준경비율제도의 소득금액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사업자는 거래의 증빙을 수취하여야 하고 경비지출사실을 쉽게 증명할 수 있는 주요경비는 실지 지출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경비는 업종별로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에 의해 필요경비를 인정한다. 주요경비는 매입경비(고정자산 매입비용 제외)와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을 말한다. 표준소득률제도에서는 사업자가 필요경비를 입증할 책임이 없었지만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주요경비의 증빙을 갖추어야 하므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그만큼 소득세 부담이 늘어난다.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 계산방법은 다음 식 (3)과 같다.

$$\begin{aligned}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임차료} + \text{인건비}) \\ &- \text{기준경비율에 의해 자동으로 인정되는 비용} \\ &= \text{수입금액} - \text{주요경비}(\text{매입비용} + \text{인건비} + \text{임차료}) \\ &- (\text{수입금액} \times \text{기준경비율}) \quad (3) \end{aligned}$$

다만, 기준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기준소득금액)이 다음의 단순경비율에 의해 계산한 소득금액에 국세청장이 정하는 배율('2002년 귀속분의 배율은 1.2 임.')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그 배율을 곱하여 계산한 다음의 금액으로 할 수 있다.

$$\text{소득금액} = \text{수입금액} - (\text{수입금액} \times \text{단순경비율}) \quad (4)$$

즉,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에 가장 기본이 되는 매입비용, 종업원에 대한 인건비,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증빙서류를 받은 금액만 비용을 인정하고, 나머지 규모가 크지 않은 비용은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로 비용을 인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제도이다.

기장 사업자는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기준경비율제도의 시행과는 무관하게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10%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반면에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10%(복식부기의무자는 20%)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따라서 사업자는 장부를 기장해야 하며 무기장 사업자도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빠짐없이 받아야 세금을 줄일 수 있다.

2.2.3 기준경비율·단순경비율 산정 절차

무기장 사업자의 소득세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매년 고시하여야 한다. 이 때 기준경비율은 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사업자가 제출한 손익계산서 및 원가명세서의 경비비율을 기초로 산정한다. 계정과목별 경비율에 의하여 산정하며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을 제정하여 「기준경비율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국세청장이 결정하는데 그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기장신고자의 소득세 신고자료(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에 의해 수입금액 대 전체경비 비율 산정

Table 2. 단순경비율에 의해 신고할 수 있는 소규모 사업자의 기준(직전년도 수입금액기준)

연도별(귀속년도) 업종 구분	2002년~2003년	2004년~2005년	2006년~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도·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및 아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	1억5,000만원	9,000만원	7,200만원
제조업, 숙박·음식점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건설업, 소비자용품 수리업, 운수·창고업, 통신업, 금융·보험업	9,000만원	6,000만원	4,800만원
부동산임대업, 사업서비스업·교육서비스업·보건 서비스 및 사회 복지 사업 등 서비스업	6,000만원	4,800만원	3,600만원

(2) 손익계산서와 원가명세서의 계정과 별 경비율을 산출하고 전체경비 비율에서 실지 지출을 인정하는 주요경비(매입경비, 인건비, 임차료)의 비율을 차감

(3) 무기장자는 계상할 수 없는 감가상각비, 퇴직급여 충당금의 경비비율 차감

(4) 소득세 조사에서 적출된 경비부인액의 비율을 차감

(5) 세부담 급증과 업종별 불균형 시정을 위해 일부 비정상적인 경비비율을 조정

(6) 기준경비율 = $\textcircled{1} - (\textcircled{2} + \textcircled{3} + \textcircled{4}) \pm \textcircled{5}$

한편, 단순경비율은 동일 업종의 평균경비율에서 일정기간 소득세 조사결과 필요경비 불산입된 경비와 추계신고자는 필요경비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경비를 차감하고 각종 경제지표 및 재무분석자료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소규모사업자용 단순경비율 = $\textcircled{1} - (\textcircled{2} \pm \textcircled{3})$

3. 기준경비율제도 하의 세무계획

3.1 기준경비율제도의 경영관리 측면 효과

무기장 의원에서는 기준경비율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경영관리의 한 부분으로 세후 순이익 극대화 실현을 위한 세무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경영관리 기법의 하나로 합법적인 절세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즉 기존의 일부 관행과 같은 표준소득률에 기댄 제도적인 탈세가 아닌 계획된 절세를 계획하여야 한다. 탈세란 그 원인이 되는 행위가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에도 고의나 과실에 의하여 그 납부할 세액을 탈루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표준소득률 자체의 불합리성으로 인한 실질적인 탈세가 가능한 면이 있었다. 탈세행위는 그 원인행위가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과세요건을 충족시키고 있는데 비하여 절세행위는 어떠한 경제적 효과를 누리기 위하여 선택 가능한 합법적이고 통상적인 거래 형식 중 세금이 줄어드는 거래형식을 통하여 조세를 경감시키거나 배제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원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 절세를 위한 세무관리가 필요하다. 기준경비율이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원에서는 개인 병원의 경영방침이나 관리 측면에서 세무계획을 만들어 적정과세를 실현하여야 한다. 의원에서 절세를 위한 세무계획 수립 시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한다.

첫째, 소득세를 포함한 부담해야 할 조세의 종류 및 과세요건을 잘 파악한다. 여기서 과세요건은 납세의무자, 과세대상, 과세표준 및 세율을 말한다. 과세요건이 파악되면 납세의무가 성립되고 확정되는 내용과 시기를 알게 됨으로써 부담해야 할 조세의 정확한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둘째, 과세표준을 낮추기 위한 방안을 검토

한다. 결국 납부해야 할 세액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세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세표준을 최대로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세제, 공식적인 회계장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거래와 관련된 전표 및 세금계산서 등 원시 증빙자료 관리를 철저히 한다. 이는 세무목적 뿐만 아니라 의원의 원가관리에도 도움이 된다. 네째, 세법상 부여되는 제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며 조세지원 제도가 있는지 살펴보고 가능한 활용한다. 개원의들은 일반적으로 세무사에 세무신고를 대행하므로 의원 입장에서 절세를 위해 할 수 있는 조치들을 강구해야 한다. 기준경비율제도는 사업자가 스스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므로 신고납세제도에 부합되는 제도로서 세무 측면과 경영관리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첫째, 사업자가 주요경비의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므로 장부를 기장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고 주요경비의 입증책임이 납세자에게 있고 소득세조사도 받게 되므로 조사회피를 위한 기장 기피 관행이 근절되고 추계신고로 인한 매력의 감소로 빠르게 기장이 확대될 수 있다. 둘째, 사업에 기본이 되는 주요경비는 사업자가 증빙서류를 수취하여 소득을 계산하게 되므로 표준소득률과 같은 획일적인 과세가 자양되고 사업자 개인별 소득수준에 맞는 공평한 과세가 실현될 수 있다. 셋째, 지금까지 무기장사업자는 자기가 지출하는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었다. 그러나 기준경비율제도에서는 주요경비에 대한 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으면 자기의 소득세 부담이 그만큼 늘어나게 되므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을 철저히 수령하여야 한다. 그 결과 거래상대방의 매출자료도 노출되므로 거래당사자간에 연쇄적인 과세자료 양성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3.2 적격 증빙을 통한 세무관리

앞의 식 (3)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준경비율제도 하에서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 비용에 대한 입증이 필요한데 주요 경비별 입증 서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비용'과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이하 "정규증빙서류"라 함)를 수취한 금액

- 소득세법 제160조의 2 제2항 단서와 같은 법 시행령 제208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는 지출 사실이 확인되는 영수증 등 증빙서류를 비치·보

관하고 있는 금액

- 위의 두 가지에 해당하지 않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에 대하여 정규증빙서류를 수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서에 「주요경비지출명세서」를 첨부하여 제출한 금액 둘째,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는 다음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 급여·임금은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퇴직급여는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한 금액
-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지급조서를 제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및 일용근로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을 지급받은 자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이 확인되고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서명 날인한 증빙서류를 비치·보관하고 있는 금액.

의원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으므로 인정되는 비용의 내용을 잘 파악한다. 우선 매입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입비용'은 다음에 정하는 재화의 매입(사업용고정자산의 매입을 제외함)과 외주가공비 및 운송업의 운반비로 한다.

- '재화의 매입'은 재산적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으로 한다.

- '외주가공비'는 사업자가 판매용 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 '운송업의 운반비'는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둘째, 위에서 언급된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아니하는데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음식료 및 숙박료
-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그리고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는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으로 한다. 만약 재고자산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연도 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매입비용'과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및 '종업원의 급여·임금·퇴직급여'(이하 "주요경비"라 한다)는 당해 과세연도에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에 기초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가산하고 기말재고자산에 포함된 주요경비를 공제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셋째, 장부를 기장하지 않은 기준경비율 적용대상 사업자가 소득금액을 계산하기 위해 수입금액에서 공제한 매입비용 또는 임차료 중에서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정규증빙서류) 등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그 거래내용을 주요경비지출명세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3.3 기준경비율제도의 한계와 향후 방향

기준경비율제도가 표준소득률제도에 비하여 진일보한 제도이긴 하지만 의원 소득을 정확히 파악하기에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다.

첫째, 기준경비율 제도는 수입이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수입에 대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고 동일업종의 사업자는 실제 지출한 비용과 관계없이 모두 같은 소득률로 과세하는 표준소득율의 단점을 보완하는 제도이므로 수입이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한 논의는 없다. 즉 이 제도 내에서 실제 수입을 적정하게 보고하게 만드는 유인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의원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장현황신고시 파악되는 수입이외에는 수입에 대한 추정자료가 없는 셈이므로 비급여수익에 대한 누락이 상당 부분 발생할 소지가 존재한다.

둘째, 단순경비율은 업종별 총 경비율로 소규모 사업자는 수입금액에 이율을 곱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므로 과거의 표준소득률을 역으로 적용하는 것과 동일하다. Table 2의 연도별 기준경비율 적용 대상 기준금액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행초기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다소 많을 수밖에 없으나, 연차적으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을 축소하여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으로 편입하고,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는 다시 기장권으로 흡수하는 단계적 접근방법이 반드시 진행되어야 한다. 이런 절차가 진행되지 못하는 경우 결국 다수의 무기장사업자는 과거의 표준소득률제도에서와 같은 왜곡 현상이 벌어질 것이다.

셋째, 일정규모이상(직전연도 수입금액이 4,800만원)인 사업자가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 부과되는 무기장가산세를 대폭

상향조정하고(복식부기의무자의 경우도 마찬가지) 간편 장부내상자가 장부를 기장하는 경우 현재 10% 기장세액공제를 높여 일정액의 세액공제나 기장세액공제정도를 대폭확대할 필요가 있다. 즉 장부 기장시에 부여되는 혜택이 무기장에 의한 기준경비율 채택시에 비하여 세금 측면에서 월등하게 유리할 수 있도록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넷째, 사업자가 장부를 기장하면 기장신고를 할 수 있는 하나의 형식이 마련되는 것일 뿐이며 이에 더하여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현실화되어야 비로소 정직한 기장신고제도가 확립될 수 있다. 따라서 기준경비율제도가 우선은 사업자로 하여금 비용에 대한 입증책임을 지움으로써 회계 장부를 갖추도록 유도하는 방식인데 기준경비율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는 이상은 사업자는 기장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세무간섭만 많은 기장신고를 선택할 이유가 줄어든다고 볼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완전 기장이 될 수 있도록 세무행정이 이끌어 자야한다.

다섯째, 기장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자 또는 의사 등 전문자격사 등 특정업종에 대해 기준경비율 자체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의사 등 전문자격사의 경우에는 일반 영세사업자와는 달리 전문가집단으로 상대적으로 단순한 기장능력이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여섯째, 기준경비율제도 시행초기에 세부담이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기준경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에 단순경비율에 배수를 상한으로 두고 있는데 국세청장이 배수의 크기를 상당히 적게 설정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인 세 부담의 증가효과가 없어질 뿐만 아니라 실제 발생경비 입증이라는 제도의 취지에도 위배됨으로 배수의 폭을 보다 높이던지 아니면 2005년도부터 즉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결 론

의약분업 이후 많은 의사들이 개원함으로써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어 건강보험 청구건수와 금액이 예년에 비해 줄어드는 등 의원 경영환경에 많은 변화가 일고 있다[4]. 세제 측면에서는 2002년 규속 소득분에 대한 소득세 신고부터는 기준경비율제도가 시행됨으로써 표준소득률에서와 같이 증빙없이도 비용

을 인정받을 수 있는 방법은 사라진다. 따라서 비용으로 공제받을 수 있는 증빙을 잘 준비하는 세무계획이 필연적으로 요구된다. 의사를 포함한 자영사업자에 대한 탈세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기준경비율 제도를 잘 이해하고 합리적인 세무관리를 함으로써 합법적으로 세금을 절약하고 나아가 적정과세가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원의 경제적 발전과 더불어 사회적인 의식향상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더 나아가 비급여를 포함한 의원 수익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비용과 관련된 장부를 갖추는 단계로 발전한다면 조세회피와 관련된 사회의 시각을 해소하고 장기적인 의료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기준경비율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가 추가적으로 수행될 필요가 있다. 첫째,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 자체의 산정근거에 대한 조사 및 적절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둘째, 자료의 축척이 이루어지면 제도 도입 전후 시점을 택해 기준경비율제도가 의원의 경영수지에 미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셋째, 기준경비율제도가 의원의 납세행위에 미치는 효과와 같은 행위론적 측면의 연구가 필요하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2003년도 상명대학교 교내연구비에 지원에 의해 수행됨.

참고문헌

- [1] 국세청, “기준경비율 제도해설”, 2001. 3.
- [2] 국세청, “2003년도 소득세 확정신고시 기준경비율 신고 안내”, 2003. 4.
- [3] 윤석철, “국내 대학병원 회계의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세무와 회계저널 제2권 제1호, 2001.
- [4] 안태식 · 오동일 외, “병의원 경영수지분석자료에 의한 원가분석연구”, 서울대학교 경영 연구소, 2001. 12.
- [5] 안태식 · 오동일 외, “경제성장률과 의료환경변화를 고려한 수가정책시사점분석”, 서울대학교 경영연구소, 2002. 5.
- [6] 오동일, “진료비 보상을 위한 SGR의 적용가능성에 관한 연구”, 산학기술성공학회 2002. 6.